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4415호, 1991. 12. 14)으로 불일치한 내용수정
- 법령상 조례의 규정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폐지
- 세목의 신설 및 세목조정에 따른 부과, 징수 규정 마련

주요골자

- 지역개발세 신설 및 현행 시·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른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 신설
- 법령에서 위임한 세율의 조정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조 제1항
- 개정 지방세법(법률 제4415호, 1991. 12. 14)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1조(과세의 근거) 도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도시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도세에대하여 그 부과 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역,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 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도지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시장, 군수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2. 등록세
3. 면허세

③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시설세
2. 지역개발세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부 과 징 수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도지사는 도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도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동장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간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의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

제8조(허가등의 제한) 시장·군수가 영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2. 허가등의 종류
3. 허가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9조(징수유예신청) 도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도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객체의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서류의 경유) 이 조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 기타 서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13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도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4조(공시송달)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계시관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도세징수교부금) ①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도지사는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분기마다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율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세 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 ④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⑤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보 통 세

제 1 절 취 득 세

제1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0조의 3 및 제11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기재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년월일
3. 취득물건의 소재지 및 그 용도
4. 기타 참고사항

제18조(구관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110조의 4 제2항 제3호에서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9조(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액 결정기준일등)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②영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1월 1일
2. 건물 및 선박 : 매년 1월 1일

③제2항의 경우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이 없었거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

제20조(취득신고 및 자진신고납부등) ①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년월일과 취득의 사유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에 있어서는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 수령, 주수, 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7. 차량, 중기에 있어서는 종류, 연식, 용도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 명칭, 경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9.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 광구의 면적, 광업권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0.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
년월일과 면허번호
 11.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
기의형식 및 용도
 12. 골프 회원권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에 있어서는 골프장 또는 콘도미
니엄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이용기간 및 연간 이용일수
 13.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와 성명 또는 명칭
-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타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
서에는 당해 공사 시행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
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 제5호와 법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연월일, 그 사유와 건축물
의 소재지, 구조, 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 ⑤선박, 차량과 중기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
해 시공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
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설계서 및 시공비명세서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⑥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 시설, 가격, 취득 및 설치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년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년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1항 각호의 해당사항
6. 과세표준액과 그 산정근거
7. 기타 참고사항

⑨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후 5년 이내에 과세물건이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영 제86조의 3에서 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광산용 임목취득의 면제신청) 법 제10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한 임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풍업권설정자 또는 광산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 및 벌채허가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물건의 소재지

3. 취득년월일, 별채허가 연월일 및 별채기간
4. 수종, 수령, 주수, 축정량(제적)
5. 기타 참고사항

제22조(취득물건 전입신고) 타 시·도에서 취득한 취득물건을 전입한 자는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절 등 록 세

제2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27조, 제128조, 제128조의 2 및 제12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 등록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년월일
3. 등기, 등록물건의 소재지 및 그 용도
4. 기타 참고사항

제24조(구관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법 제128조의 3 제2항 제1호에 의한 "구관사업 등"에 대한 경감범위와 경감율을 제18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 3 절 면 허 세

제2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 3 장 목 적 세

제 1 절 공 동 시 설 세

제 1 판 소 방 시 설

제27조(납세의무자) ①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도내에서 법 제 18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상(이하 "재산세 과세대상"이라 한다)에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경우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28조(부과지역의 고시) ①도지사는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본수 또는 적재량

제30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봉지)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공동시설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건축물, 선박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건축물, 선박에 대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 군수에게 봉지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봉지하여야 한다.

제31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①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건축물, 선박을 직접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선박의 사

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공동시설세의 현황부과)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33조(납세고지 및 부과정수) ①공동시설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정수는 재산세의 부과정수의 예에 의한다.

②시장·군수가 공동시설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 선박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 과세표준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 하여야 한다.

제34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이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 ② 남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동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남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제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시장·군수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36조(신고의무 및 직권동제) 남세의무자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그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남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직권으로 동제하고 그 뜻을 남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절 지 역 개 발 세

제 1 관 발 전 용 수

제37조(납세의무자) 개발한 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용수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38조(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기재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전력 생산 및 사용현황
3.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의 무상사용확인서
4. 기타 참고사항

제39조(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1원으로 한다.

제40조(부과대상지역)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총 청북도 일원으로 한다.

제 1 관 지 하 수

제41조(정의) 이 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라 함은 최소한 지하수를 음용수로 판매하는 것과 은천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채수한 은천수를 목욕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용수"라 함은 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지하에서 채취하는 자연상태의 물을 말한다.

제42조(납세의무자) 음용수로 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43조(과세표준 및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채수권 물 1세제곱미터당 10원으로 한다.

제44조(부과징수등) ①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일원으로 한다.

②지하수를 채취하여 음용수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채수가능량을 현지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매월의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 3 판 지 하 자 원

제45조(납세의무자)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만, 석탄 또는 광구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6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1로 한다.

②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광구소재지 관할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47조(부과대상지역)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대상지역은 충청북도일원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